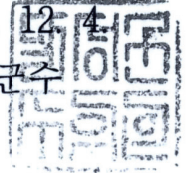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01
----------	------

제출일자 : 2020. 12. 4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이관 등 감면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함에 따라 제3조 삭제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안 제1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1호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2020. 10. 17. ~ 11. 5.) 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2020년 12월 31일” 을 “2023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7조 중 “2020년 12월 31일” 을 “2023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을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한다.

조례 제2526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조례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
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
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
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
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
영을 하려는 자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
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
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
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
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2023년 12월 31일-----

1. 옥포 농공단지	----- -----
2. 구지 농공단지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 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 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감면 제외대상)-----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